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0. 29 선고 2024가단2329 판결 [건물명도 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4. 10. 15.

판결 선고 2024. 10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의 표시 ①,②,③,④,⑤,⑥,⑦,⑧,⑨,⑩,⑪,⑫,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지하 우측 32㎡를 인도하라.
나. 2,471,79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선민정

별지